

의안번호	제 호
의 결 연 월 일	2023. . . (제 회)

의결사항	
------	--

울대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사무의
민간위탁 동의안

제 출 자	고 성 군 수
제출연월일	2023. 10. 6.

울대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제 호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: 2023. 10. 6.

제 출 자: 고성군수

1. 제안이유

- 가. 울대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위·수탁 운영 협약기간이 2023. 12. 31.로 만료됨에 따라 위·수탁 운영 재협약 필요함
- 나.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·관리의 효율성 및 수질관리를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

2. 위탁근거

- 가.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제4호(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)
- 나. 고성군 울대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3조(관리운영)
- 다.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(군의회 동의 및 보고)

3. 위탁사무

- 가. 시설현황
- 시설명: 고성군 울대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
 - 위치: 고성군 고성읍 월평로 163

- 시설용량: 1,000m³/일
- 처리공법: HANT공법+황탈질설비

나. 위탁개요

- 위탁기간: 2024. 1. 1. ~ 2026. 12. 31.(3년간)
- 위탁방법: 위·수탁 운영 협약 체결
- 위탁범위
 -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 오·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한 시설운영 및 수질 관리
 -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을 위한 읍대농공단지 내 입주업체 관리
 - 입주업체 처리비용 부담금 산정
 - 기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

4. 추진일정

- 2023. 12. : 위·수탁 운영 협약 체결

붙임 관계법령 1부.

[붙임]

관계 법령

□ 물환경보전법

제48조(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)

- ① 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은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 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물환경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배출하기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으며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사업자 또는 그 밖에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 일으킨 자(이하 "원인자"라 한다)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.

□ 고성군 울대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

제3조(관리운영)

- ①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은 군수 또는 군수로부터 위탁 받은 자가 한다.
- ② 처리시설의 관리운영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처리시설 유입 오·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한 시설운전 및 관리
 2. 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을 위한 사업장의 관리
 3. 비용부담 산정
 4. 그 밖에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
- ③ 군수는 필요시 제1항에 따른 관리·운영을 「물환경보전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48조제1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.

□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)

군수는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군수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관리 업무 등 군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
1. 공익정보다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2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
3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

제6조(군의회 동의 및 보고)

-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민간위탁 여부에 관하여 고성군의회(이하 “군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